

의안번호	2210021
의 퇴 인	이성윤 의원
회 답 일	2024. 4. 24
추 계 번호	25B247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채용 일정 및 채용과 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 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함. 이 경우 구인자는 채 용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노력 하여야 하고,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함	의무규정
2	안 제12조(채 용심사비용 등 에 관한 시정명 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은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1항) 1. 제9조를 위반하여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킨 구인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채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구인자 3.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채용서류의 반 환 등을 하지 않거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거나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구인자	재량규정
3	안 제13조의2 (국고보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 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채용 일정 및 채용과 정의 고지)	—	• 미대상 － 개정안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 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 명령이 가능한 경우에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채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구인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13조의2(국고보조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재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채용문화확산(1051-307)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 공정채용문화확산 사업은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지원 사업과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관리 컨설팅과 공정채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업무(점검, 제재 부과 등)와 관련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공정채용인프라구축 지원	3,821	3,821	3,821	—	2,600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1,810	1,810	1,483	327	174

자료: 고용노동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